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6.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 2024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 변경 : 30만원 미만 → 45만원 미만(안 제4조)
- 납세고지서, 독촉장 송달  
(원칙)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 (45만원 미만) 일반우편

## 4. 참고사항

- 부서협의 결과
  - 1) 협의기간 : 2024. 4. 19. ~ 2024. 4. 23.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성별영향평가 :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6.(21일)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55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세 개정사항, 부동산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45만원으로 인상됨(지방세기본법 제55조, 시행일 2024.1.1.)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독촉장을 송부할 때 3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액을 45만원 상향하고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일원화하여 세무공무원의 직접 교부에 드는 행정력 낭비와 전자 송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0.12.29] [[시행일 2024.1.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6, 2020.12.29] [[시행일 2024.1.1]]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9] [[시행일 2024.1.1]]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4.1.1]]

[본조제목개정 2020.12.29.]

## (현행 조례)

###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남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

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남양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7. 9. 28., 개정 2020. 5. 14.>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 관련 조문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나. 비용발생 요인**

-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30만원 → 45만원)하는 사항으로 고지서 금액이 30만원 이상 45만원 미만 시 일반우편 요금이 증가하고 등기우편 요금이 감소함
- 고지서 금액 30만원 이상 45만원 미만이 77,000건으로 예측되며, 일반우편 요금(건당 520원) 증가하는 비용보다 등기우편 요금(건당 2,740원) 감소 비용이 훨씬 커서 세출의 순증가액이 1억원 미만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세출의 순증가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재정경제국 세정과장 장동단